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810

발의연월일: 2024. 12. 20.

발 의 자:정동영·조인철·박민규

박주민 · 임미애 · 정태호

서영교 • 이기헌 • 최민희

민형배 • 윤준병 • 김한규

김민석 • 김 현 • 이정헌

진선미 • 이훈기 • 김영호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뉴스 등 정보 획득, 금융서비스 이용, 지도, 택시와 버스 등 교통수단 예약, 상품 구매 및 예약, 콘텐츠 소비 등의 전반적인 활동이 모바일을 통해 가능해지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들의 기본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음.

그러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용량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에는 긴급상황 시 정보를 찾거나 재화를 구매하거나 연락을 취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 어르신과 청소년 등에게는 긴급상황 등에 대비하여 데이터용량이 모두 소진되더라도 최소한의 데이터 이용이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같은 통신기본권은 차후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어르신과 청소년 등에게 기본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우선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속도의 데이터용량을 무료로 제공하도록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최소한의 이용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기본 데이터 이용 보장)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고령자·청소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자가 사용 중인 요금제에서 제공되는 약정 데이터량을 소진한 후에도 추가 이용요금 없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 도매제 공을 받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도매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도매제공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신 설>	제29조의2(기본 데이터 이용 보장) ① 「전파법」에 따라 할 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고령자·청소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자가 사용 중인 요금제에서 제공되는약정 데이터량을 소진한 후에도 추가 이용요금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수있도록 조치하여야한다.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도매제공을 받는 다른 기간통
	소개세 6 로 본 다른 기선 6 신사업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 행하기 위하여 도매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도매제공을 하여야 한다.